##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계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15

발의연월일: 2024. 10. 8.

발 의 자:조계원·김문수·강준현

민형배 • 박해철 • 김우영

양문석 · 김기표 · 박민규

윤준병 • 박희승 • 허성무

이기헌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이용권 등을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체육시설 이용권 등 부정판매가 온·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바,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온·오프라인상 부정판매 행위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, 그 처벌수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체육시설 이용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, 현행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,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·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권 등의 부정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2제2

항,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9조의2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1조의2제2항 중 "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·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"을 "체육시설"로 한다.

제3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를 삭제한다.

3.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9조의2(몰수·추징) 제3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,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의2(체육시설 이용권등의	제21조의2(체육시설 이용권등의
부정판매 금지 등) ① (생 략)	부정판매 금지 등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누구든지 <u>「정보통신망 이</u>	② <u>체육시설</u>
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	
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	<u>.</u>
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	
을 자동으로 반복·입력하는	
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	
<u>체육시설</u> 이용권등을 부정판매	
하여서는 아니 된다.	
제38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	제38조(벌칙) ①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	
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	
하의 벌금에 처한다.	,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3.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
	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
	<u>매한 자</u>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2
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	
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	
에 처한다.	

- 1. (생략)
- 1의2.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
- 2. · 3. (생략)
- ③ (생략)

<신 설>

- 1. (현행과 같음) <<u>삭 제></u>
  - 2. 3. (현행과 같음)
  - ③ (현행과 같음)

제39조의2(몰수·추징) 제38조제1 항제3호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 여 취득한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,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.